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최기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35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최기찬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임만균, 전병주
의원(9명)

1. 제안이유

- 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 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불법촬영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기타 사항 있을시 기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말한다.
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

원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확충) ①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5200000000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최기찬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20.

회신일 : 2021.05.26.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6조(전문인력 확충)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5조(불법촬영 점검),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실태조사),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바, 비용추계 제외(첨부자료 참고)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6조(전문인력 확충)에 해당](제3조제1항 제1호)

나. 추계결과 ≙ 249,000천원(연평균 49,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49,000천원으로 연평균 49,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전문인력 확충) 비용은 용역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구축’ 2021년 사업예산 49,80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관련 문의한 결과, 전문인력 운영을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같은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부산교육청²⁾ 및 경남교육청에 유선 문의 한 결과 용역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함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1)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으로 공문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계획」 알림(2021.5.6.), 「2021년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협조 요청」(2021.4.21.), 「2021년 신학기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협조 요청」(2021.3.11.)'협조 요청 및 불법촬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1.5. 21-24p ‘불법카메라 점검 방법 안내’에서 불법촬영 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배포(제5조제3항)

2) 부산교육청은 용역사업으로 2021년 4000만원 내외의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다른 사업과 예산편성을 같이하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예산편성 내역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함. 인천교육청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을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안내 한 바,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천교육청 예산 편성은 없다고 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49,000천원(연평균 49,800천원)
- 총비용 = 전문인력 확충 비용
- = 249,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전문인력 확충 (안제6조)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249,000
	소계(b)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249,000
총비용(b-a)		49,800	49,800	49,800	49,800	49,800	249,000

- 전문인력 확충 비용 ≙ 249,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전문인력확충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전문인력 확충 비용 ≙ 49,800천원

·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탐지점검체계구축(용역사업)'의 2021년사업예산(49,800천원) 준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